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기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도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공포, 2023. 2. 16. 시행)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경정 1명, 경위 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도자치경찰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제외
한다. 이하 같다)”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계급별	합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총계	3	3	3	3	3	3	3	2	3	3	3	3	3	3	3	3	3	3
총경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경정	1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경위	1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